

제198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월성우주창의과학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거 창 군

# 월성우주창의과학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안 번호	2014~
----------	-------

제출일자 : 2014. 1.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1. 요구이유

월성우주창의과학관이 준공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월성창의우주과학관 운영조례」 제10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월성우주창의과학관을 위탁운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월성우주창의과학관

나. 위 치 : 북상면 월성리 1608번지

다. 규 모 : 과학관 1동 774.38㎡ / 지상 2층

구분	1층 면적(㎡)					2층 면적(㎡)				
	체험관	영상관	사무실	홀	기타	체험실	체험관	체험실2	홀	기타
면적	176.63	92.15	16	63.27	91.95	16	182.81	16	63.27	56.3

라. 사업내용 :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관리

마. 대상사무

- 시설 :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 운영 :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

바.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3년

- 위탁기간 만료시는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사. 수탁자격

- 경상남도내 소재 법인 또는 단체

아.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자. 예산지원

- 운영·관리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위탁대상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부과·징수

### 3. 참고사항

####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월성우주창의과학관을 전문적인 사업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을 기하고자 함.

#### 나. 향후계획

-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 : 1월초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6~9명) : 1월중순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 : 1월말
- 위탁계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월초
- 전문인력 및 근로자 채용 : 2월초
- 과학관 등록 및 개관식 : 3월중

#### 다. 위탁운영 계획 : 따로 붙임

#### 라. 관계법령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위탁운영 계획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준공에 따라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 I 위탁근거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II 시설현황

- 사업위치 : 월성청소년 수련원(북상면 월성리 1608번지) 내
- 규 모 : 과학관 1동 774.38㎡ / 지상 2층

구분	1층 면적(㎡)					2층 면적(㎡)				
	체험관	영상관	사무실	홀	기타	체험실	체험관	체험실2	홀	기타
면적	176.63	92.15	16	63.27	91.95	16	182.81	16	63.27	56.3

- 사 업 비 : 3,050백만원(국비 1,000, 군비 2,050)
- 주요 체험 시설
  - 4D영상관, 가변중력체험, 월면걷기체험, 무한회전체험
  - 우주체중계, 반사굴절만원경, 태양관측시스템, 우주복체험 등
  - 우주인 등록증 발급(발권시스템),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 “SLR 홍보관” 설치 - 한국천문연구원
- 운영예산 : 275백만원(민간위탁금 250, 집기비품 25) / 군비

### Ⅲ 시설연혁

- 2011. 05. 26 :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건립 협약 체결
- 2011. 07. 27 : 과학관 건립 위치 최종 확정
- 2012. 02. 29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2. 05. 22 : 과학관 건립 공사 착공
- 2013. 01. 17 : 전시시설 제작 설치사업 발주
- 2013. 05. 08 : 전시시설 제작 설치사업 착공
- 2013. 05. 28 : 건축공사 완료
- 2013. 09. 25 : 과학관 운영 조례 제정
- 2013. 12. 31 : 전시시설 제작 완료

### Ⅳ 수탁자 선정 방침

-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으로 투명성 유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공정성 보장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부적격시 재공고

### Ⅴ 위탁개요

- 위탁기간 : 3년(재계약 가능)
- 위탁업무
  - 시 설 :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 운 영 :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
- 수탁기관 모집 : 공개모집
  - 공 고 : 거창군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 신청자격 :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
  - 위원구성 : 6~9명
  - 위원선정 : 관련공무원, 군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협약체결 : 수탁자와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예산지원 및 사용료 납부
  - 운영·관리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위탁대상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납부(수탁단체와 별도 협의)
  - 위탁운영 체결후 자체운영규정(채용, 회계, 인사 등에 관한 사항) 승인

#### IV 향후 추진일정

- 모집공고 : 2014. 1월초
- 접 수 : 2014. 1월초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 2014. 1월중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
- 심의회 개최 및 수탁자 발표 : 2014. 1월말
  - 심의내용 : 공모에 응모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에 따라 심사)
- 위·수탁 계약체결 및 민간위탁금 교부 : 2014. 2월초
- 전문인력 및 근로자 채용 : 2014. 2월초
- 과학관 등록 및 개관식 : 2014. 3월중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조(과학관의 구분)**

과학관은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과학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2. 공립과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3. 사립과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전문개정 2013.1.23]

### **제6조(등록)**

① 과학관(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 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

1. 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시설명세서
6. 과학기술자료의 목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 제6조의6(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에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전문직원의 자격)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전문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과학기술자료 관련 직렬의 연구직공무원이거나 연구직공무원이었던 사람
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과학기술자료 관련 직렬의 연구직공무원이거나 연구직공무원이었던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과학관이 취급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기관·과학관 또는 박물관 등에서 과학기술자료에 관련되는 전문적 사항을 담당한 경력(이하 "과학관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해당 과학관이 취급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 외의 사람으로서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13.4.22]

### 제7조의5(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절차 등)

법 제6조의6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 간의 계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4.22]

##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

### 제3조(업무)

과학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과학문화의 공간 제공
3. 우주과학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체험·탐구·연구 프로그램 개설·운영
4.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탁 운영)

①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학관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과학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의회동의)**

-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